

3-6-1

국립경찰종합병원 또는 민간 종합병원 유치

주체별		신규여부		예산구분		추진상황			
국책	자체	신규	계속	예산	비예산	임기내/임기후	이행도	추진율(%)	완료예정 시기
○		○		○		임기내	이행 후 계속추진	100%	2022.12.
임기내 공약목표		국립경찰종합병원(분원) 아산 유치 확정							
주관부서		미래전략과		팀(전화번호)		공공기관유치팀(041-530-6152)			

❖ 정책목표: 국립경찰병원(분원) 아산 유치 확정

□ 정책(사업) 개요

- 국가적 의료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공공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종합병원 설립
 - (위 치) 아산시 초사동 463-10 일원 [경찰종합타운 內, 81,118㎡ (24,538평)]
 - (규 모) 550병상(상급종합병원)
 - (예 산) 약 4,330억 원
 - (운 영) 환자진료 및 감염병 연구 (국가재난 시 지역거점 병원, 격리치료)

□ 추진현황

- 국립(종합)병원이 없고 인프라가 낙후되어 시민들이 수도권 등 타지역 병원을 다니는 의료 역외유출 현상 심각 (충남 1조 3,859억원, 전국 3위)
-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탄한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중부권 거점 공공의료기관(국립경찰병원) 설립

□ 추진계획

- 중부권 재난거점 역할의 상급종합병원(550병상) 신속 건립
 - 병상규모 축소되지 않고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며, 아산시 타당성 용역 (B/C 1.49, 수요 1천병상)을 통해 확보한 550병상 설립(안)을 토대로 신속예타* 절차 추진

* (신속예타요건) ①타법률에 예타신속처리 규정이 있는 사업,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·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②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, ③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

※ 지침상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단축 + 조사기간 3개월 단축(9→6개월)

< 연차별 추진일정 >

2022년	2023년	2024년
·경찰청 시행 경찰병원 분원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대응 ·경찰병원 분원 아산유치	·사업계획(안) 수립위한 시 차원의 연구용역 추진	·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(기재부) 및 조사(KDI) 대응
2025년	2026년	
·건축설계 착수(경찰청) ▶기본설계, 실시설계 시행	·경찰병원(분원) 건축공사 착공	

단위사업 세부 추진상황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
국립경찰병원 유치 추진																	

□ 투자계획

< 사업·재원별 >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 사업별	재원	총계	기 투자	임기중 투자계획						임기후 투 자
				소계	2022	2023	2024	2025	2026	
국립경찰 병원유치	총 계	158	-	158	-	158	-	-	-	-
	국 비	-	-	-	-	-	-	-	-	-
	도 비	-	-	-	-	-	-	-	-	-
	시 비	158	-	158	-	158	-	-	-	-
	기 타	-	-	-	-	-	-	-	-	-

□ 공약달성 확인지표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임기후
계획	-	아산유치 확정	국비 등 확보 (이행 후 추가목표)	기본 및 실시설계 (이행 후 추가목표)	착공 (이행 후 추가목표)	'29년 준공 (이행 후 추가목표)
실적	-	- 아산유치 확정 (22. 12.) - 경찰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MOU 체결(23.3.24.)	추진중	-	-	-
달성	-	달성	추진중	-	-	-

□ 중앙정부 협조 필요사항

- 기획재정부: 병상규모 축소없이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 건의
- 경 찰 청: 경찰병원(분원)의 조속한 설립추진

□ 기대효과

- 국가재난 대응 지역거점 의료 인프라 확대로 시민의 의료 복지 제고
- 급성기 진료,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, 응급 의료 시설 확대
-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의료 집중 문제 해소

□ 참고사항

-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이 포함된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('24.2.1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3(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)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사업목표, 사업규모, 수요추정, 추진체계, 소요예산,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.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.

- 국회 법사위 회의 시 신속예타에 대한 내용 ‘부대의견’ 의안에 별도 명시 요청
- 최종 행안위 위원장 제출안(본회의)에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 명시

<부대의견>

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·자구심사 시 개정안에 대하여 “안 제8조의3에 따라 경찰병원을 신규로 설립하면서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” 는 의견을 제시함.